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이광희의원 · 용혜인의원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82
----------	-------

발의연월일 : 2025. 8. 21.

발 의 자 : 이광희 · 용혜인 · 정춘생
민병덕 · 임미애 · 노종면
조계원 · 김 윤 · 박지원
이해민 · 김문수 · 전종덕
의원(12인)

제안이유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대법원 2019.10.31. 선고, 2013두20011 판결)인 점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공무원과 교원도 조합원의 임금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사용자는 민간부분의 사용자와 달리 「정부조직법」상 공무원 임금제도를 관장하는 기관, 예산을 관장하는 기관, 공무원을 직접 사용하는 기관 등이 각기 분산되어 있어 임금교섭을 하더라도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정부교섭대표의 권한은 제한적인 구조임.

아울러, 2008 정부교섭(2019. 1.21체결)을 통해 ‘19. 3월부터 공무원 보수민간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통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실효성 있는 임금교섭기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원들만이 참여하는 구조로 교원 등 모든 직종의 공무원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낮은 임금으로 인해 전체공무원들의 이직 의향과 이직률은 2017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임금 등에 관한 교섭권을 일원화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교원 및 그 밖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임금교섭기구를 신설함으로써 노정이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의 공무원 임금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하여 정부가 공무원에 대한 역할을 다하고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국민에 대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무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에서는 “임금” 대신 “보수”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

다. 공무원의 임금수준을 공무원이 성실히 직무에 전념하고 적절한 품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되, 민간 대비 임금수준에 맞도록 함(안 제4조).

라. 정부는 임금 인상안 마련을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무원임금위원회는 90일 이내 이를 결정하여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효력은 단체교섭의 효력을 가지며, 이를 제출받은 정부는 그 결과대로 「국가재정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공무원임금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공무원임금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바. 공무원임금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을 대표하는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공무원(이하 “노조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

과 2급 이상의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전문가를 대표하는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노동·임금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전문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친 사람으로 하되, 형평이 맞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문가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함(안 제9조).

아.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제5조제1항의 요청이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는 노조위원과 정부위원이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하며, 2회 이상 출석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

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노조위원 3인 이내, 정부위원 3인 이내, 전문가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하되, 각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1조).

차.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의 실무적 검토 및 관계부처 등과 협의·조정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제도 담당 과장이 되도록 함(안 제13조).

타. 위원회, 소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임직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파. 위원회는 이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와 소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하. 정부는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수준을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리도록 함(안 제17조).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 사항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1호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1호의 보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임금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임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임금의 결정 원칙) 공무원의 임금은 공무원이 성실히 직무에 전념하고 적절한 품위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생활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되, 제17조에 따른 민간 대비 임금수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임금의 결정절차 및 효력)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적용할 공무원의 임금인상안 마련을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무원 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때는 9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 및 「교원노조법」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이를 제출받은 정부는 그 결과대로 「국가재정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임금결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공무원임금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공무원임금위원회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임금수준 결정 및 기타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종류·직군 등 간의 임금균형에 관한 사항
4. 공무원과 민간구분 근로자 간 또는 공무원의 종류·직군 등 간의 임금균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공무원 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한다.

1. 공무원을 대표하는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공무원(이하 “노조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과 2급 이상의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1명

나. 기획재정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인

다.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인

라.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인

마. 인사혁신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인

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인

3. 전문가를 대표하는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노동·임금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전문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제1호의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친 사람

으로 하되, 형평이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문가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제11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전문가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1.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제5조제1항의 요청이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을 요구 할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는 제8조제1항제1호·제2호

에 해당하는 위원의 각 2분의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위 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노조위원 3인 이내, 정부위원 3인 이내, 전문가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하되, 각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맡는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제10조제3항을 준용하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 회의 등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의 실무적 검토 및 관계부처 등과 협의·조정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제도 담당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 소위원회 및 실무협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임직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와 소위원회 및 실무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공무원 임금수준 실태 조사) 정부는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수준을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